

☎ 보도일시: 2019. 8. 1.(목) 배포시

☎ 총 4쪽 (붙임 자료 포함)

❖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

과 장 김동욱 (044-202-7740)

사무관 고병곤 (044-202-7743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35℃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

– 폭염경보 발령(35℃ 이상) 시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
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–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℃(현행 38℃)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.
- 지난 6.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『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』의 『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(물, 그늘, 휴식) 이행 지침』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*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℃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,
 - 7.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℃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,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
 - 또한, 기상청에도 『폭염 영향예보』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요령 “산업”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.
- * '18년에는 폭염 주의보(33℃), 경보(35℃) 2단계로 분류하였으나, '19년에는 폭염 온도 상승에 맞춰 관심(31℃) → 주의(33℃) → 경계(35℃) → 심각(38℃)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함

- 고용노동부는 ❶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·감독, ❷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(물, 그늘, 휴식) 기본 수칙 홍보, ❸ 지방자치단체, 안전보건공단,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고
- 특히,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(27대)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·홍보할 예정이다.
-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“물, 그늘,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.”라고 강조하면서,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열사병 예방 3대(물, 그늘, 휴식) 기본 수칙 이행 지침

1 폭염이란?

-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℃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.

☞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기준

폭염주의보 : 최고기온이 33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폭염경보 : 최고기온이 35℃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

-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, 열탈진, 열실신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.

☞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, 발열, 구토, 근육경련, 발열 등이 있습니다.

2 물, 그늘, 휴식!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.

물	•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. •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.	
그늘	■ 노동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. ■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. •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. •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• 의자나 돛자리,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. • 소음·낙하물,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.	
휴식	•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1시간 주기로 10~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. ☞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.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(33℃)를 발령하면 매 시간당 10분씩, 폭염경보(35℃)를 발령하면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. ☞ 근무 시간을 조정(근무 시간: 9시~18시 → 5시~14시)하여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5시) 옥외 작업을 피하십시오 •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. • 같은 온도 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 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. (땀이 증발 되지 않아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) ☞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 지수나 더위 체감 지수를 활용하여 휴식 시간을 조정하세요. (기상청 누리집(www.kma.go.kr)에서 날씨누리>생활과산업>생활기상정보) •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	

3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 요령을 숙지하십시오.

위험 단계	대응 요령
관심 31°C	- 질병 예방(식중독, 장티푸스)을 위해 사업장의 청결 관리에 유의 -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위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준비 - 노동자가 질 수 있는 그늘 준비 -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 사전 확인
주의 33°C	-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- 노동자가 질 수 있는 그늘 제공 - 매시간 마다 10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오후 5시)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-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-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-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경계 35°C	-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- 노동자가 질 수 있는 그늘 제공 - 매시간 마다 15분씩 그늘에서 휴식하기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오후 5시)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※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에도 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- 옥외 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-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 제한 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-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심각 38°C	-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제공 - 노동자가 질 수 있는 그늘 제공 - 매시간 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하기 옥외작업 자제 무더위 시간대(오후 2시~오후 5시)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※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- 옥외작업을 할 때는 가급적 아이스 조끼, 아이스팩 등 보냉 장구 착용 - 열사병 등 온열 질환 민감군에 대하여는 옥외 작업 제한 - 안전모 및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 - 수면 부족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떨어짐, 넘어짐 등 안전사고 유의

4 응급 상황을 대비하세요.

■ 발생 전 동료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

- 온열 질환 초기 증상으로 피로감, 힘없음, 어지러움, 두통, 빠른 심장 박동, 구역,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노동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.

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| | 하세요.

-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.
☞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.
-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.
-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.
-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.
- 건강 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.